

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12 월 3일

발 의 자 : 김 영 길의원의 2명

### 1. 개정사유

○ '08. 10. 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·의결 공포되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, ±20% 범위에서 자치단체(심의회)가 탄력적으로 결정 함에 따라

○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○ 월정수당 개정

▷ 월정수당은 월2,697,900원 ⇒ 월2,035,000원 (안 제5조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### 4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월정수당은 월2,697,900원” 을 “월정수당은 월2,035,00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부터 지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 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)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월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,000원으로 하고 <u>월정수당은 월2,697,900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5조 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)①----- ----- ----- <u>월정수당은 월2,035,000원</u>-----.</p>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671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. 12. 3
- 나. 제출자 : 김영길 의원외 2명
- 다. 위원회 회부 : 2008. 12. 11
- 라. 위원회 상정 : 2008. 12. 12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문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'08. 10. 8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·의결 공포되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, ±20% 범위에서 자치단체(심의회)가 탄력적으로 결정함에 따라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개정
  - ▷ 월정수당은 월2,697,900천원 ⇒ 월2,035,000원 (안 제5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

## 5. 검토보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월정수당 월2,697,900천원을 월2,035,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범위내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